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의 4급 공무원 정원 및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의 상한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에 국제통계팀을 설치하여 통계외교 업무와 통계자료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며, 국제기구 자료 제공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직급조정(5급 1명)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나누기 동참을 위한 업무혁신 및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9급 2명)으로 전환하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5명(9급 5명)을 감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국제통계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조의4제5항의 2호, 3호 및 6호를 삭제하고, 1호 및 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7호부터 9호를 신설한다.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양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5. 해외파견관 등 인적교류 업무 지원
7.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8. 통계분야 국제개발협력(ODA)에 관한 사항
9.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

제1조의4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제통계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관리

2. 간행물 외의 국제통계자료 수집

3. 북한통계에 관한 사항

4. 신남방, 신북방 통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제1항 중 “7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7명)”을 “4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으로 한다.

제11조의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64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중 “7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7명)”을 “2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으로 한다.

별표 3의 사무운영서기보를 “10”을 “8”로 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로 신설한다.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45”를 “147”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99”를 “198”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61”을 “162”로 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7”을 “4”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한다.

부 칙

부칙 <제000호, 2021. X. X.>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제통계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통계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제통계팀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4(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1조의4(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국제협력담당관 및 <u>국제통계팀</u> 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u>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양국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 및 관리 3. 간행물 외의 국제통계자료 수집 4. (생략) 5. 해외파견관 업무 지원	⑤ ----- --. <u>1. 양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u> <u><삭제></u> <u><삭제></u> 4. (현행과 같음) 5. 해외파견관 <u>등 인적교류</u> 업무 지원

6. 북한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7.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8. 통계분야 국제개발협력(ODA)에 관한 사항 9.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 ⑧ 국제통계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관리 2. 간행물 외의 국제통계자료 수집 3. 북한통계에 관한 사항 4. 신남방, 신북방 통계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 2와 같다.	제11조의2(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7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7명)-----.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4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 • • •	• • • • •	
<u>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 서기보</u>	<u><신 설></u>	<u>2</u>	+2
사무운영서기보	<u>10</u>	<u>8</u>	△2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u>145</u>	<u>147</u>	+2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 서주사	<u>199</u>	<u>198</u>	△1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161</u>	<u>162</u>	+1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 서기보	<u>7</u>	<u>4</u>	△3
사무운영서기보	<u>10</u>	<u>8</u>	△2